

# 분류사 빈칸노트(경제 · 사회편)

70만명의 선택, 검증된 역사 전문가!  
www.megagong.net



## 주제 1. 경제 정책

### 1. 토지 제도

#### ① 삼국 시대

삼국 시대 지배층인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녹읍, 식읍 그리고 사유지와 노비였다. 01 은 귀족관료에게, 식읍은 왕족과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와 가호로 농민에게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고,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 ② 통일 신라 시대

통일 이후 02 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는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성덕왕은 왕토 사상에 의거하여 백성에게 03 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경덕왕 때 귀족의 반발로 녹읍은 다시 부활되었다.

#### ③ 고려 시대

##### 1) 정비 과정

태조(왕건)는 건국이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04 을 나누어 주었다.

역분전은 공로와 충성도 및 인품을 따져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경종 때에 공복 제도를 토대로 전시과 제도를 만들었다(시정 전시과). 이때는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목종 때에는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량도

재조정하였다(개정 전시과). 그러나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문종 때에 현직 관료에게만 주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경정 전시과는 한외과를 폐지하고, 무산계 전시와 별사전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도 시정되었다.

##### 2) 특징

전시과 제도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땀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지급하였다. 이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 3) 토지의 종류

05 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관료뿐만 아니라 군인, 한인, 서리, 향리, 공장, 악공 등도 토지를 지급받았다.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였다.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인전을 지급하고,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06 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왕실의 경비 마련을 위해서 내장전을 지급하였으며, 각 관청의 경비 충당을 위해 07 을 지급하였다.

##### 4) 민전

민전은 매매, 상속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귀족이나 일반 농민들이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또,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민전의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내어야 했다.

##### 5) 전시과의 붕괴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이런 폐단은 무신 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다. 전시과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관리의 생계를 위하여 08 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나 대형 사찰이 사패전을 빙자하여 토지 겸병을 확대하였다. 이들의 토지 겸병으로 농민 몰락은 심해져 국가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 ④ 조선 시대

##### 1) 과전법

고려 후기 이래로 누적된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 말에 과전법이 마련되었다.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확보, 농민 생활 안정,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과전법에 따라 관료들은 18과로 나뉘어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의 토지를 수조지로 받게 되고, 한량품관은 09 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킨, 홀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 2) 토지 제도의 변화

15세기 중반 이후 세습되는 토지가 증가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때 10 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11 를 실시하였다.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그 후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어 수조권 지급 제도가 없어졌다. 관리들은 오로지 녹봉만 받게 되었다.

## 2. 수취 제도

### ① 삼국 시대

조세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를 거두었으며, 그 지역의 특산물도 거두었다. 왕궁, 성, 저수지 등을 만드는 데에 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였다.

### ② 남북국 시대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수취하여 통일 이전보다 완화하였다. 공물은 촌락 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었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 도다이 사의 쇼소인에서 발견된 신라장적(민정문서)은 서원경(청주) 부근 4개 촌락의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신라는 촌락의 토지 면적, 인구 수, 소와 말의 수, 특산물 등을 파악하는 문서를 만들고, 조세, 공물, 부역 등을 거두었다.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특히 이 문서에서 사람은 남녀 각각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가호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12 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실수도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발해의 수취제도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조, 콩, 보리 등 곡물을 거두는 조세 그리고 베, 명주, 모피 등의 특산물을 거두는 공물, 궁궐이나 성곽 공사에 농민들을 동원하는 부역이 있었다.

### ③ 고려 시대

#### 1) 호적과 양안

고려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다.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는 호부와 삼사를 두었다. 13 는 호적과 양안을 만들어 인구와 토지를 파악, 관리하였으며, 14 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등 회계 사무를 맡았다.

## 2) 수취 제도

고려의 세금은 토지에서 거두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물, 장정의 수에 따라 부과하는 역이 있었다.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

거둔 조세는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서 개경의 좌, 우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양계 지역은 조창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경창으로 운반하지 않고 현재의 군사비로 사용하였다.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현물로 거두는 제도이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 부곡, 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부과하여 공물을 거두었다(주현공부법). 공물에는 매년 내는 상공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의무를 지게 하였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4] 조선 시대

조선의 농민은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을 졌다.

### 1) 조세(토지세)

조세(토지세)는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 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공법).

조세는 쌀, 콩 등으로 냈다. 군현에서 거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가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하여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조세는 경창으로 나르지 않고 현지에서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썼다(잉류 제도).

양난 이후 정부는 연분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15 이라고 한다(1635). 이러한 개편으로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효종 때 수등이척법을 폐지하고 양척동일법을 실시하였다.

### 2) 공납(공물)

공납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중앙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은 각 가호에게 다시 할당하여 거두었다.

15세기 후반부터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들이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내게 하였다(인징, 족징).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급증하였다.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경우도 나타났고, 이이와 유성룡 등은 공물을 쌀로 거두는 수미법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도에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효종 때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와 전라도로 확대되었으며,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토지 소유자인 지주양반과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여 년이 걸렸다. 대동법을 관할하는 관청으로 16 이 설치되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에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였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농민들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을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17 이라는 어용상인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들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들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은 상공(정기 공물)에 한정되었으므로, 별공과 진상은 존속하였다.

### 3) 역(요역과 군역)

16세 이상의 정남에게는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었다.

군역에는 일정 기간 군사 복무를 교대로 근무하는 정군과, 정군이 복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있었다.

요역은 가호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뽑아서 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였다.

18 때 경작하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에 동원할 수 있는 날도 6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팔결일부제).

16세기 이후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종종 때 군포 수취를 양성화하여 군포 2필을 수취하고 군역을 면해주는 군적수포제가 시행되었다.

양 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면서 장정 한 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들은 도망가거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19 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들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20 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염세·선박세 등 왕실 잡세는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 정답

- |    |     |    |     |    |       |    |     |
|----|-----|----|-----|----|-------|----|-----|
| 01 | 녹읍  | 06 | 구분전 | 11 | 관수관급제 | 16 | 선혜청 |
| 02 | 신문왕 | 07 | 공해전 | 12 | 9등급   | 17 | 공인  |
| 03 | 정전  | 08 | 녹과전 | 13 | 호부    | 18 | 성종  |
| 04 | 역분전 | 09 | 군전  | 14 | 삼사    | 19 | 균역법 |
| 05 | 공음전 | 10 | 직전법 | 15 | 영정법   | 20 | 결작  |

## 주제 02. 경제 활동

### 1. 농업 활동

#### ① 고대

##### 1) 삼국 시대

삼국 시대의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부유한 자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였다. 철제 농기구는 6세기에 이르러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우경도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시비법(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에는 대부분의 토지에서 계속 농사짓지 못하고 1년 또는 수년 동안 묵혀 두어야 하였다.

##### 2) 남북국 시대

통일 이후 사회가 안정되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한계가 많았다. 대체로 비옥한 토지는 왕실, 귀족, 사원의 소유였고, 농민의 토지는 대부분 척박하여 생산량이 적었다. 향이나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에 사는 농민과 대체로 비슷한 생활을 하였으나, 그들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졌다. 밭해는 콩, 조, 보리, 기장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가 중심이었다. 철제 농기구가 널리 사용되고 수리 시설이 확충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특히, 목축이 발달하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는데,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다. 수렵도 활발해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었다.

#### ② 고려 시대

고려 시대 농민들은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의 민전을 경작하거나 국·공유지 및 귀족의 사유지를 빌려서 경작하였다.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시비법(녹비법, 퇴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감소하고 상경지가 증가하였다.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고, 논농사도 고려 말에는 모내기법이 도입되었다.

고려 말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왔고, 이암은 원의 농서인 01 을 소개하였다.

#### ③ 조선 전기

조선 정부는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을 억제하였다.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농업 기술의 보급에 노력하였다.

농업 진흥을 위해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 농서를 간행, 보급하였다.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알맞은 농법을 정리하였으며, 02 때 강희맹이 지은 금양잡록은 시흥 지방의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간행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농업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다.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으며, 논농사도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시비법도 발달하여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 목화 재배도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자연재해, 고리대, 세금부담 등으로 농민은 자기 소유의 땅을 팔고 전호(소작농)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이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되자, 정부는 잡곡, 도토리 등을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구황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호패법, 03 등을 강화하여 농민의 유망을 억제하였다.

#### ④ 조선 후기

##### 1) 지주제의 확대

양반 이후 양반은 농지 개간에 주력하는 한편, 농민의 토지를 사들여 농토를 늘려나갔다. 그 결과 18세기에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점차 소작인의 저항이 심해지자 소작인의 소작권(도작권)을 인정하고 소작료도 낮추거나 일정액으로 정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도조법). 지주전호제가 지주와 전호 사이의 신분적 관계보다 경제적인 관계로 바뀌어 갔다.

##### 2) 농민 경제의 변화

조선 후기에는 수리 시설이 확충되어 04 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밭농사의 경우 05 이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러한 농법의 보급은 농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광작이 성행하였으며, 일부 농민은 광작 농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려 부농층이나 서민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농민은 토지에서 이탈해 임노동자가 되는 등 농민의 계층 분화가 촉진되었다. 또,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들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 3) 농서의 편찬

농업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농서가 편찬되었다. 농가집성(신속), 산림경제(홍만선), 색경(박세당), 해동농서(서호수), 과농소초(박지원) 등이 있다. 특히 서유구는 한양 주변의 농촌에 거주하면서 06 리는 농촌 생활 백과사전을 펴냈다.

## 2. 수공업 활동

### ① 고대

삼국 시대에는 기술이 뛰어난 노비에게 무기, 장신구 등을 생산하게 하였으나 나중에는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자를 배정하여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는 공장부라는 관청을 두어 수공업 제품의 생산을 관장하였다. 주로 각종 비단(어아주, 조하주, 능라)과 장신구, 무기, 불상, 범종 등을 제작하였다.

발해의 수공업은 철, 구리, 금은 등 금속 가공업과 삼베, 명주, 비단 등의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하였다.

### ② 고려 시대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所) 수공업이 중심이었으나, 후기에는 사원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관청 수공업은 관청에 기술자(장인)를 소속시켜 무기, 비단 등 왕실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형태였으며, 농민을 부역으로 동원해 보조하게 하였다.

소(所)에서는 금, 은, 철, 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떡, 차, 생강 등을 생산하여 공물로 납부하였다. 사원에서는 기술이 좋은 승려와 노비가 있어 베, 모시, 기와, 술, 소금 등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민간 수공업은 농촌의 가내 수공업이 중심이었다.

### ③ 조선 전기

조선 시대에는 수공업자를 공장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소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하였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에 식비 정도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판매하여 가계를 꾸렸다. 이 기술자들은 부역으로 동원되는 기간 이외에는 사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관영 수공업은 16세기에 들어와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 민영 수공업자, 즉 사장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농기구를 만들거나 양반의 사치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 ④ 조선 후기

#### 1) 수공업

조선 후기에는 도시 인구의 증가, 대동법 실시로 상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생산이 촉진되었다. 이에 국가에 장인세를 바치며 활동하는 수공업자(납포장)가 증가함에 따라 관영 수공업은 쇠퇴하였다. 민간 수공업자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과 비교할 때 경쟁력도 높았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하여 공인이나 상인들에게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07 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수공업자 중에서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독립 수공업자가 등장하였다.

#### 2) 민영 광산의 증가

민영 수공업의 발달에 따라 그 원료인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금, 은, 구리 등의 채굴을

촉진시켰다. 특히,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효종 때 <sup>08</sup> 를 실시하여 허가를 받은 민간인에게 정부의 감독 아래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이른바 잠채도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sup>09</sup> 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혈주)와 채굴 노동자(광군),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3. 상업 활동

#### ① 고대

신라는 5세기 말 소지왕 때 경주에 시장을 설치하였으며, <sup>10</sup> 때 동시와 이를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는 인구가 늘어났고, 상품 수요도 증가하였다. 7세기 말 효소왕 때 경주에 서시와 남시를 열고, 감독 기관인 서시전, 남시전을 설치하였다.

발해는 상경 용천부 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 상업이 발달하였다. 상품 매매에는 현물 화폐를 주로 썼으나, 외국의 화폐도 함께 사용하였다.

#### ② 고려 시대

고려는 개경, 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들이 주로 이용하게 하였다.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의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과 술, 차 등을 파는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운영하였다. 매점매석과 같은 상행위를 감독하는 <sup>11</sup> 도 두었다.

고려 후기에는 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시전 규모도 확대되고 업종별 전문화가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행상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고려 후기 <sup>12</sup> 때에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각염법)를

시행하였다.

#### ③ 조선 전기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양 도성의 종로 거리에 상점(시전)을 만들고 이를 상인에게 임대하였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sup>13</sup> 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평시서)를 두었다. 15세기 후반 전라도 지역에서 등장한 장시는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장시에서는 <sup>14</sup> 들이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 ④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이었다. 처음에는 공인들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공인들 중 일부는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sup>15</sup> 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이후에는 사상들이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인구가 급증하였던 서울에서는 종루, 칠패, 이현 등에서 난전이 성행하였다. 정조 때 <sup>16</sup> 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사상들의 활동은 개성, 평양, 의주, 동래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sup>17</sup> 은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포구 상업이 발달하였다. 포구를 거점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으로는 선상, 객주, 여각 등이 있었다.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구입해 와 포구에서 처분하였는데, 경강상인이 대표적인 선상이었다. 그들은 한강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하였다. 한편,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들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장시는 보통 5일마다 열렸는데,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이 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국에 천여 곳의 장시가 개설될 정도로 지방 상업이 발달하였다.

## 4. 화폐

### ① 고려 시대

성종 때에는 철전인  를 만들었으나 유통에 실패하였다. 그 뒤 숙종 때에는 의천의 건의에 따라  을 설치하고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원 간섭기에는 원의 지폐(교초, 보초)가 유입되어 통용되기도 하였다. 공양왕 때 저화가 발행되었으나 곧 고려가 멸망하여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 ② 조선 전기

태종 때 저화, 세종 때 , 세조 때 팔방통보 등의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부진하였다. 일반적으로 농민은 화폐로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무명을 화폐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여 이를 포화라고 불렀다.

### ③ 조선 후기

인조 때 팔분체 조선통보를 주조해 개성 지방을 중심으로 통용시켜 그 쓰임새를 살펴보았다. 그 후 효종 때 이를 널리 유통시키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때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상평통보는 호조와 상평창 그리고 감영과 군영에서도 주조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자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화폐 사용의 확대로 유통 경제는 더욱 발달하였다. 그러나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고리대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전 부족 현상(전황)이 나타났다.

한편,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환, 어음 등의 신용 화폐가 점차 보급되어 갔다.

## 5. 무역 활동

### ① 고대

#### 1) 삼국 시대

고구려는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 민족과 무역을 하였다. 백제는 남중국 및 왜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으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당항성을 통하여 직접 교역하게 되었다.

삼국은 토산물(모피, 인삼, 직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비단·서작도자기 등을 수입하였다.

#### 2) 남북국 시대

통일 이후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공무역뿐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하였다. 국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슬람 상인이 울산까지 와서 무역하였다.

무역 확대로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촌,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절인 신라원이 만들어졌다. 수출품은 배, 금, 은, 인삼, 해표피 등이었고, 당에서 비단, 서적 등을 수입하였다.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에  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은 대표적인 신라원이었다. 장보고는 견당매물사, 회역사 등의 교역사절을 당과 일본에 보냈다.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들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 ② 고려 시대

고려는 송, 요(거란)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예성강 어귀의  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으로부터 비단과 약재, 서적 등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 인삼, 칠기,

화문석 등을 수출하였다.

거란과 여진은 은, 모피, 말 등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과 바꾸어 갔다.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하면서 수은, 황 등을 가지고 와 식량,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한편, 대식국인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③ 조선 전기

조선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무역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명과는 사신들이 왕래할 때 하는 공무역과 사무역을 허용하였다. 여진과는 국경 지역에 설치한  를 통하여 교역하였고, 일본과는 동래에 설치한  을 중심으로 무역하였다.

### ④ 조선 후기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이었고, 수출하는 물품은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이었다.

한편,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왜관을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은 인삼, 쌀, 무명 등을 팔고, 청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넘겨주는 중계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본으로부터는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들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중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들은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이었으며, 개성의  은 양자를 중계하며 큰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 정답

- |          |          |         |        |
|----------|----------|---------|--------|
| 01 농상집요  | 08 설점수세제 | 15 도고   | 22 청해진 |
| 02 성종    | 09 덕대    | 16 신해통공 | 23 발해관 |
| 03 오가작통법 | 10 지증왕   | 17 경강상인 | 24 벽란도 |
| 04 모내기법  | 11 경시서   | 18 건원중보 | 25 무역소 |
| 05 견종법   | 12 충선왕   | 19 주전도감 | 26 왜관  |
| 06 임원경제지 | 13 육의전   | 20 조선통보 | 27 개시  |
| 07 선대제   | 14 보부상   | 21 속종   | 28 송상  |

## 주제 03. 신분 제도

### 1. 고대

#### ① 삼국 시대

부여, 초기 고구려에는 자신의 관리와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에 참가하였던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가(加) 또는 대가라고 불렸다. 이들은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차츰 귀족으로 편제되어 갔다.

읍락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01 과 그 아래 생산을 담당하는 평민(하호), 최하층에는 노비가 있었다.

삼국 시대의 사회는 크게 귀족, 평민, 천민의 신분 구조를 갖추었다.

왕족을 비롯한 옛 부족장 세력이 중앙의 귀족으로 재편성되어 정치권력과 사회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고구려는 왕족과 왕비족의 대가를 02 라 불렀으며,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와 진씨, 해씨 등 8성 귀족이 고위 관직과 지방 장관을 독점하였다.

평민은 대부분 농민으로서 신분적으로는 자유민이었으나, 귀족에 비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들은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납부하고 노동력을 징발 당하였다. 천민은 대부분 노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 ② 골품 제도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가 있었다. 골품제는 신라 수도에 사는 지배층(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신분 제도였다.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였다.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정해져 있었다.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진골은 골품 제도에서 최고 귀족으로 중앙 관청의 장관직을 독점하고, 귀족회의를 통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였다.

6두품은 대족장 출신으로 득난이라고 불리었다. 6관등인 03 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대아찬 이상의 관등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6두품은 골품의 제약으로 인하여 중앙 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의 장관 자리에는 오를 수 없었다.

#### ③ 남북국 시대

삼국 통일 이후 왕권이 강화되면서 6두품 세력이 부각되었다. 6두품 출신은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였다.

삼국 통일 이후 골품 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골품의 구분이 하급 신분층에서부터 점차 희미해지면서, 3두품에서 1두품 사이의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되었다.

신라 하대 당에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6두품 출신 지식인들은 신라의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는 등 반신라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발해는 이원적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계 주민이었고, 피지배층의 대부분 말갈인이었다.

### 2. 고려 시대

고려의 신분은 귀족과 중류층, 양민과 천민이 있었다. 고려는 신분의 세습이 원칙이었으나 신분 상승의 길이 열려 있었다. 향리 자체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며, 농민이 군공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있었다. 외거노비가 재산을 축적하여 양인 신분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 ① 귀족

귀족은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로, 이들은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귀족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문벌 귀족을 형성하였으며, 고려 사회를 이끌어 갔다.

지방의 향리 자제들도 과거를 통하여 벼슬에 나아가 신진 관료가 됨으로써 귀족의 대열에 들 수가 있었다.

무신정변 이후 귀족층의 변화가 나타났다. 종래의 문벌 귀족들이 약화되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다. 이후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등장한 지배 세력은 04 이었다. 이들은 고려 후기에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대농장을 소유한 최고 권력층이었으며, 가문의 힘을 이용하여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시켜 갔다.

고려 말에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한 향리 출신들이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이들을 신진 사대부라 부른다. 신진 사대부들은 권문세족으로 대표되는 구질서와 여러 가지 모순을 비판하고,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 ② 중류층

중류층은 지배 기구의 말단 행정직으로 존재하였는데,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잡류, 궁중 실무 관리인 <sup>05</sup> ,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군반, 지방의 역(驛)을 관리하는 역리 등이 있었다. 이들은 직역을 세습적으로 물려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

신라 말 각 지방의 호족은 성종 때 향리 제도가 마련되면서 향리로 편제되었다. 이후 현종 때 주현의 크기에 따라 향리의 정원을 정하고 공복을 제정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 중 호장, 부호장 등 상층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하위의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 ③ 양민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들로서 이들을 <sup>06</sup> 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조세, 공납, 역의 부담을 졌다.

양민이면서도 일반 군현민에 비하여 규제가 심한 특수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향, 소, 부곡에 거주하였는데 양민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 ④ 천민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었다(일천즉천).

공노비에는 입역 노비와 외거 노비가 있었다. 사노비는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구분되었다. 솔거 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잡일을 돌보았으며,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로서 주로 농업 등의 일에 종사하고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특히, 외거 노비는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일반 농민과 비슷한 생활을 하였다.

그 밖의 천민으로 화척(도살업), 재인(광대), 양수척(버들고리 장수) 등이 있었다.

## 3. 조선 전기

### ① 양천 제도와 반상 제도

조선은 양천 제도를 법제화시켜 사회 신분을 크게 양인과 천인(민)으로 구분하였다. 양천제는 갑오개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16세기 이후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을 구별하는 반상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이 때문에 신분 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고착되었다.

### ② 양반과 중인

#### 1) 양반

양반은 본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 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문무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천거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은 각종 국역을 면제받았다.

#### 2) 중인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의관, 역관)만을 의미한다.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양반들은 첩에서 난 소생들을 <sup>07</sup> 이라고 하여 차별하였고,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

### ③ 상민과 천인(민)

#### 1) 상민

평민, 양인으로도 불리는 상민은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말한다. 나라에서는 이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므로 상민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상민 중 절대다수인 농민들은 조세, 공납, 부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한편, 양인 중에는 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랑역천(身良役賤)이라 하였다. 조례, 나장, 일수, 조군, 수군, 봉수군, 역졸 등이 있다.

#### 2) 천민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였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경우, 그 소생 자녀도 자연스럽게 노비가 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 시대 노비는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술거 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한편, 백정, 무당, 창기, 광대 등도 천대받는 신분이었다.

## 4. 조선 후기

### ① 신분제의 동요

조선 후기에는 봉당 정치가 변질되어 가면서 양반 상호간에 일어난 정치적 갈등은 양반층의 분화를 가져왔다. 권력을 장악한 일부 양반은 별얼 양반으로 불렸으며, 그 밖에 많은 양반은 정권에서 밀려나 향촌 사회에서나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이 되거나 더욱 몰락하여 잔반이 되기도 하였다. 양반 계층의 자기 도태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속에서도 양반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를 축적한 농민들이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또는 역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 ② 중간 계층의 동향

임진왜란 이후 서얼의 관직 진출이 활발해졌다.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들은 이를 관직 진출의 통로로 활용하였다.

영정조 때에 이르러 서얼은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상소하여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활약하였다. 결국 철종 때 신해허통으로 서얼의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었다.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은 기술직 중인들에게도 자극을 주었다. 중인들은 08 때 대규모 소청 운동을 일으켜 신분적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중인 중 역관은 서학을 비롯하여 외래문화 수용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부는 대외 무역에도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 ③ 노비의 해방

조선 후기에 노비는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하여 무단히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공노비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자, 공노비를 종래의 입역 노비에서 신공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전환시켰다.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09 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인하여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10 때에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1801). 그 후 갑오개혁 때 노비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 정답

- |        |         |          |       |
|--------|---------|----------|-------|
| 01 호민  | 04 권문세족 | 07 서얼    | 10 순조 |
| 02 고추가 | 05 남반   | 08 철종    |       |
| 03 아찬  | 06 백정   | 09 노비종모법 |       |

## 주제 04. 사회 제도와 사회 모습

### 1. 법률과 풍속

#### ① 고대

##### 1) 고구려

고구려는 통치 질서와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형법을 시행하였다.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에 처한 뒤에 다시 목을 베었고, 그 가족들을 노비로 삼았다. 적에게 항복한 자나 전쟁에서 패한 자 역시 사형에 처하였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물게 하였다. 고국천왕 때 소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01 을 실시하였다. 고구려 지배층의 혼인 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와 함께 서옥제가 있었다.

##### 2) 백제

백제의 법률도 매우 엄하였다. 반역한 자나 전쟁에서 퇴각한 군사,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한 관리는 3배를 배상하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했다. 또 도둑질한 자는 귀양을 보내고 훔친 물건의 2배를 물게 하였다.

##### 3) 신라

신라는 초기 부족사회의 전통을 유지한 제도로 화백 회의와 화랑도가 있었다. 귀족들은 화백회의를 통하여 국왕을 폐위시킨 적도 있었고, 새 국왕을 추대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화랑도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 이 조직은 귀족 자제 중에서 선발된 화랑을 지도자로 삼고, 귀족은 물론 평민까지 망라한 많은 낭도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 계층이 같은 조직 속에서 일체감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구실도 하였다. 진평왕 때 원광은 02 를 가르쳐 화랑도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② 고려 시대

고려는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법으로 중국의 03 을 참작한 71개조의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관습법을 따랐다. 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의 사법권이 커서 중요 사건 이외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역죄, 불효죄 등 사람의 기본 도리를 어길 경우 중죄로 다스렸다. 형벌의 종류로 태, 장, 도, 유, 사의 다섯 종류가 시행되었다. 귀족 지배층에 한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신의 본관지로 되돌아가게 하는 04 이 있었다. 문종 때 사형수에 대해서는 세 번 심사하여 판결하는 삼복제를 시행하였다.

고려 시대 민간의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례는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 풍속을 따랐다.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주자가례가 보급되어 가묘 설치 등 유교적 상장제례가 널리 보급되었다.

#### ③ 조선 시대

조선은 형벌에 관한 사항은 경국대전의 형전을 기본으로 하고, 05 을 참작하였다. 범죄 가운데 가장 무겁게 취급된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였다. 이 같은 범죄에는 범인은 물론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관습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초기에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많았으나, 나중에는 산송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의 사법 기관은 행정 기관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중앙에는 반역 등 중대 사건을 다루는 06 , 관리의 잘못을 따지는 사헌부, 상민 범죄를 처리하는 포도청,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그리고 노비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07 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관할 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졌다.

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상부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신문고나 징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있었다.

### 2. 사회 제도

#### ① 고려 시대

##### 1) 사회 시책

자연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조세와 부역을 감면해 주었다(재면법). 또, 고려대 때문에 농민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가 빌린 곡식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갈지 않고 버려둔 진전을 새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해 주었다.

## 2) 사회 제도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이 있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것이었다. 또,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는 08 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도록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 및 빈민 구휼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혜민국을 두어 의약을 전담케 하였다. 각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을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09 를 설치하였다.

## 2 조선 시대

조선 시대 국가는 농민이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민기에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에게는 조세를 덜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생활이 자주 어려움을 당하자 국가에서는 의창, 상평창 등을 설치하고 10 제도를 실시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향촌 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실시된 사창 제도는 양반 지주들이 향촌의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료 시설로는 동서대비원이 있는데 뒤에 동서활인서로 개칭되었다. 동서활인서는 도성의 병자와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수용하여 구휼하였다. 또 혜민국은 의약 제조와 판매, 제생원은 지방민 구호 및 진료를 맡았는데, 세조 때 11 로 통합되었다.

## 3. 향촌 사회의 모습

### 1 고려 시대

고려 시대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가 있다. 향도는 삼국 시대 화랑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매향(埋香) 활동을 하였다. 향도는 단순히 매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향도는 점차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되어 갔다.

### 2 조선 전기

#### 1) 유향소

조선 초기 향촌 사회의 지배층인 유향품관들은 향촌 자치 기구로 유향소를 만들었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였다. 12 는 중앙 정부가 현직 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제도로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경제소가 혁파되면서(1603) 유향소는 향소 또는 향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향촌 질서 역시 변화하였다.

#### 2) 사족의 동향

향촌 사회에서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고 있던 계층은 사족(士族)들이었다. 사족들은 향안을 작성하고 향규를 제정하였다.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족들은 그들의 총회인 13 를 통하여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다.

#### 3) 향약

16세기 이후 지방 사족은 그들 중심의 향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향약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 전통적인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만들어졌다. 향약은 종종 때 조광조에 의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14 때 이황, 이이 등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향약은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을 담당하였다. 향약의 간부인 약정, 부약정, 직월은 대개 지방의 사족 중에서 임명되었다.

#### 4) 농민 공동체 조직

촌락의 농민 자치 조직으로 두레와 향도가 있었다. 두레는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향도는 불교와 민간 신앙 등의 신앙적 기반과 동계 조직과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모두 띠는 것이었다.

주로 상을 당하였을 때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활동을 하였다.

### ③ 조선 후기

#### 1) 사족의 동향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군현을 단위로 하여 농민을 지배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이에 양반들은 향촌 사회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촌락 단위의 15 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많은 동족 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우가 세워졌다.

#### 2) 향촌 질서의 변화(향전)

전통적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하였던 사족들은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한 부농층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부농층은 수령 등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하면서 향안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구향(재지사족)과 신향(부농층) 사이의 향전(鄉戰)이다. 이로 인하여 향촌 사회에서는 수령과 향리 등 관권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에 재지 사족인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의견을 물어 보는 자문 기구로 구실이 변화하였다.

## 4. 가족 제도

### ①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지위가 존중되고 자녀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을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 ② 조선 시대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는 유교적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윤리 덕목 중에서 특히 효와 정절을 강조하였다.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효자나 열녀를 표창한 것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한편 부인과 첩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어서 첩의 자식인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조선의 가족 제도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형태에서 부계 위주의 형태로 변화하여 갔다.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점차 강화되었다. 이 무렵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16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 ③ 족보와 서원

#### 1) 족보

족보는 안으로 종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 다른 집안이나 하급 신분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족보는 종가와 방계를 구분하거나 혼인 상대자를 구하고 봉당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족보는 고려 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때 간행된 “안동 권씨 성화보”이다. 이 성화보는 남녀의 구분 없이 출생 순으로 수록하였으며, 본손뿐만 아니라 외손까지도 기록하고 있어 만성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족보의 편찬과 보학의 발달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더욱 활발해져 양반 문벌제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2) 서원

16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서원은 향약과 함께 지방 사족들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다. 서원은 선현의 제사와 자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종 때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의 위패를 모신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조선 서원의 시초이다. 백운동 서원은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사액 서원은 편액뿐만 아니라 서적과 노비, 토지 등을 지급 받고 면역면세의 혜택을 누렸다.

서원은 지방의 학문 발전을 자극하고 향촌 문화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나, 같은 학파끼리의 결속을 강화시켜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문제점도 낳았다.

조선 후기에는 붕당 간의 다툼이 격화되면서 서원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변질되었다. 같은 정파나 문종의 인물을 모시는 서원(사우, 족당)이 많이 세워졌다. 그 결과 서원은 영조 때 대규모로 철폐되기도 하였다.

## 5. 민중의 저항

### ① 신라 말

신라 말기가 되면서 귀족들의 정권 다툼과 대토지 소유 확대로 백성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져 갔다. 이 시기 자주 발생한 자연 재해는 농민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게 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중 적고적(붉은 바지 도적)은 동쪽으로 진격해 신라의 수도인 경주 외곽까지 세력을 떨치기도 하였다.

### ② 무신 집권기의 사회 혼란

무신 정변 이후 지배층의 수탈과 하층민의 의식 변화로 인해 곳곳에서 농민 및 천민의 봉기가 일어났다. 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많은 농민이 가세하였으며, 난이 진압된 뒤에도 농민 항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1176년(명종 6) 공주 명학소에서 망아망소이가 무리를 모아 봉기하였다. 정중부 집권 세력을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주민을 무마하였는데, 이는 고려 후기 향소부곡이 점차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1193년(명종 23) 김사미와 효심은 각각 운문(청도), 초전(울산)에서 봉기하여 연합하면서 경상도 여러 지역에서 기세를 올렸다.

1198년 권력자 최충현의 가노 만적이 노비를 규합하여 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다.

무신 집권기에는 각지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1202년 이바좌파 등이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1217년 평양에서 가 고구려 부흥을 내세워, 1237년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가 백제 부흥을 기치로 난을 일으켰다.

### ③ 조선 시대

조선 전기 명종 때 윤원형 등 척신의 수탈이 심해지자  등의 도적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 정치 기강의 문란은 사회 모순을 격화시키면서 곳곳에서 민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처음에는 소청이나 벽서, 과서 등의 형태로 나타났던 농민들의 항거는 점차 농민 봉기로 발전하여 갔다.

1811년(순조 11)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 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봉기를 일으켰다(홍경래의 난).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이들은 서북인에 대한 차별 대우, 세도 정권의 가렴주구 등에 반대한다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주성에서 농성하다가 관군에 의해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1862년(철종 13) 진주 백성들은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의 탐학에 저항하며 봉기를 일으켰다. 진주민란을 계기로 농민의 항거는 북쪽의 함흥으로부터 남쪽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를 입술 농민 봉기라 한다. 봉민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나자 정부는 안핵사나 선무사를 파견하여 민심을 수습하였다. 진주 민란 당시 안핵사였던 박규수의 건의로 이 설치되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6. 천주교와 동학

### ① 천주교

천주교는 17세기 초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마테오리치가 지은  22  를 소개하였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권철신, 이벽, 이가환, 정약종 등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 무렵 안정복은  23  을 지어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였다.

조선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을 방관하였다. 그러나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자, 드디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때 전라도 진산에서 어머니 제사에 신주를 불태운  24  이 사형에 처해졌다(신해박해, 1791).

1801년 순조가 즉위한 직후 노론 강경파인 벽파가 집권하면서 대탄압이 가해졌다(신유박해). 이 사건으로 이승훈, 정약종 등이 처형되고, 정약전·정약용 형제가 유배되었다. 곧이어 프랑스에 무력 동원을 요청하는 황사영의 백서가 발각되어 탄압이 확대되었다(황사영 백서 사건).

천주교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기에 탄압이 완화되며 서울과 충청도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파되었다. 조선 교구가 설정되고, 서양인 신부들이 몰래 들어와 포교하면서 교세가 점차 확장되었다.

헌종 때 풍양 조씨가 집권하면서 다시 탄압이 일어났다. 1839년 프랑스 신부 3명과 수십인의 신도가 처형된  25  가 일어나고, 1846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이 처형된 병오박해가 일어났다.

### ② 동학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26  가 창도하였다. 동학의 교리는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또, 동학은 보국안민, 후천개벽 등을 내세워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일본과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 내지는 주장을 폈다.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협시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 뒤를 이은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27  과 용담유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교단 조직(포·접)을 정비하였다.

## 정답

01	진대법	08	상평창	15	동약	22	천주실의
02	세속 5계	09	제위보	16	친영	23	천학문답
03	당률	10	환곡	17	소수 서원	24	윤지충
04	귀향형	11	해민서	18	조위총	25	기해박해
05	대명률	12	경재소	19	최광수	26	최제우
06	의금부	13	향회	20	임꺽정	27	동경대전
07	장례원	14	선조	21	삼정이정청		